

문서번호	감염병관리과-16513
결재일자	2021. 6. 15.
공개여부	부분공개(5,6)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환경보건팀장	감염병관리과장

2021년 상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

2021. 6

시 민 건 강 국
(감염병관리과)

2021년 상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

공중화장실(민간 개방화장실, 주유·충전소 화장실) 관리실태 점검결과,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개선조치하고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1 관련 근거
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**(시설점검의 확인)
 -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·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구청장에게 시정 권고할 수 있음
- 2021년 공중화장실 점검계획**(감염병관리과-9457호, 2021.3.31)

2 점검 개요

- 점검기간** : 2021. 4~5월(기간 중 25일)
- 점검대상** : 264개소(민간개방화장실 246, 주유·충전소 화장실 18)
 -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현황 : 1,249개소 (주유소 619개소 별도)
 - ※ 공공화장실 대비 관리소홀 여지가 있는 민간 영역의 화장실 집중 점검
- 점검내용**
 - 건물 외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및 개방 여부
 - 화장지,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
 - 시설물 위생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등
- 점검조 편성 및 운영**
 - 점검조 편성 : 민간 점검원 2인 1조 운영(점검요원 : ***, ***)

- 점검 시간 : 6시간 이내/일

3 점검 결과

유형별 지적사항

(단위 : 개소)

구 분	점검개소	지적건수	안내표지판 미부착 (건물외부)	이용곤란 (시건 등)	편의용품 미비치 (화장지, 비누)	관리불량 (시설파손, 청소불량)	남녀공용	기타 (폐업, 지정취소)
계	264	114	17	9	24	50	11	3
개방화장실	246	94	17	9	20	38	7	3
주유·충전소	18	20	0	0	4	12	4	0

※ 일부 개소는 지적사항이 복수임

지적사항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요청

- 외부 안내표지판 미부착 개소는 현장 재확인 후 보완조치
- 개방시간 미준수(시건 포함), 건물철거 등 이용불편을 초래하거나 없어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조치
- 개방화장실 중 남녀 공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법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배치되므로 총별 남녀분리 권고 또는 지정취소 적극 검토
- 청소상태 불량, 시설물 파손은 시민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보완토록 강력 권고

개선 권고 사항(자치구)

-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주유소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개방 유도
 - 주유·충전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으나, 화장실 미개방 시 처벌규정이 부재함 (9개 자치구에서 167개 주유소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)

4

행정 사항

공중화장실 점검요원 점검 수당 지급

○ 지급내역 : 4만원 × 25일 × 2명 = 200만원

붙임 1. 점검결과 1부.

2. 점검참여자 활동내역 1부. 끝.